

# 조세재정 Brief

K I P F I S S U E P A P E R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jcheung@kipf.re.kr

- 01 들어가는 글
- 02 주요 분석 내용
- 03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2025. 3. 12.

No.189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요약

- 2025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보호무역주의를 견지하는 다양한 관세정책이 등장하고 있음
-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은 결국 무역적자 개선에 초점이 있으므로 보복적인 관세 대응보다는 무역적자 개선 방법 마련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초기인 2017년에 228.9억달러에서 2024년에는 658.5억달러로 증가함
  - 미국은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기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이 향후 지속될지, 일시적인 인상일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노린 수단인지는 현재까지 불분명한 상황임
    - 다만 관세 인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므로 한계가 있음
- 우리나라의 대(對)미국 수입액 상위 품목은 원유, 천연가스, 프로판 등 기초 원재료이며, 이들 품목의 수입 증대를 통해 무역적자를 개선할 여지가 있음
  - 원유, 천연가스 등의 기초 원재료는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들임
  - 미국 원유 등 수입의 증가는 대(對)미국 무역적자 개선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원유 도입원 다변화 정책에도 부응함
-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무역 제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통상분쟁은 오랜 기간 수출감소로 인한 피해를 남긴 채 결국 미국 현지 생산 확대로 종결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와 지역 경제 침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미국 현지 생산 추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가로 국내 산업 공동화 및 이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 마련도 필요함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다양한 관세정책을 언급해 왔으며, 출범 이후에도 그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본고는 2025년 2월 20일까지 발췌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힘.

# 01 들어가는 글

- 2025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관세정책이 등장하고 있음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 불균형과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응하고, 미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호주의 조치를 시행할 것을 예고함
    - 미국 우선주의 정책 견지
  -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다양한 명분으로 관세를 인상하는 수입규제제도를 시행하였음
    -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거나 국가 안보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명분으로 관세를 인상·부과하였음
    - 특히 「무역법」 제232조는 지난 30년여 년간 시행하지 않았던 규제였음

- 본고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언급하고 있는 관세 인상과 이와 연관된 우리나라의 관세제도, 그리고 이전 사례 등을 살펴보고자 함
  - 보편관세와 상호관세, 그 밖의 미국의 수입규제 제도 등
  - 우리나라의 관세제도 및 수입규제제도 등
  - 한중 마늘분쟁 및 미국의 한국 세탁기 수입규제 등의 사례

트럼프 1기 관세 인상 사례

- 「무역법」 제301조 :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
  -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
- 「무역법」 제232조 :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보호.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 부과
  - 전 세계 대상으로 발동 (30년 만에 시행)
  - 한국은 협상을 통해 자발적으로 수출을 줄이는 쿼터 부과(수량 제한)
- 세이프가드 : 국내 산업보호
  - 태양광 패널 30%, 가정용 세탁기 최대 50%(중국, 한국 대상)

## 02 주요 분석 내용

### 1. 트럼프 2기 관세 인상

#### 가. 보편관세

- 보편관세는 모든 무역교역국에 대해 10~2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함
- 보편관세의 부과는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가능한 것으로 여겨짐
  -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에 의해 국제 경제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이 광범위한 대외 경제 활동 규제가 가능함
    - 1972년 8월 닉슨 대통령이 불공정 환율(달러 지급 결제 위기)문제로 10% 보편관세 부과

- \* 1972년 12월에 G10 국가와 환율 조정 합의 후 보편관세 부과 중단
- 2025년 2월 초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였지만, 펜타닐(마약) 통제 강화를 수용해서 관세 부과를 1개월 유예한 상황임
- \* 트럼프 1기 때(2019년 5월) 멕시코 불법이민 단속을 구실로 멕시코 수입에 5% 관세 부과를 발표했으나, 멕시코의 국경단속 강화를 수용해서 중지(2019년 6월)
- 2025년 2월부터 중국에 대해 추가로 10% 관세 부과 중
  -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다른 무역교역국과 차이가 있음

참고

-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지위 철회 등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음
  - 중국에 대한 정상무역관계 지위 철회 ⇒ WTO 최혜국 대우 관세혜택 박탈
    - 60%의 관세, 전기차에 대한 200% 관세 적용 제안
      - \* 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미국이 특정 국가에 최혜국 대우 관세 혜택을 영구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중국은 2000년에 이 지위를 획득함과 동시에 WTO에 가입
      - \*\* 현재 NTR 제외 국가는 북한, 쿠바, 벨라루스, 러시아
      - \*\*\*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China Tariffs"로 관세율표에서 부록처럼 별도로 제시하고 있음
- 중국 해외직구에 대한 관세 면세 폐지 예정
  - 미국은 현재 800달러 이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음
  - 쉬인(Shein), 테무(Temu) 등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이 800달러 이하 관세 면제제도를 이용하여 미국 판매가의 절반 이하의 초저가 전략으로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하고 있어, 중국 해외직구에 대한 관세 면세 적용을 폐지할 예정

- 보편관세를 「무역법」 제301조,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 다양한 미국의 수입규제제도와 연계시킬 수는 있으나, 모든 품목에 대해 불공정 무역과 국가 안보라는 명분과 연결하기엔 한계가 있음
  - \* 미국의 다양한 수입규제제도에 대해서는 후술할 예정

- 미국은 FTA 체결국에 대해서도 보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음
  - 이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였다가, 현재는 관세 부과를 1개월 유예한 상황임
    - \* 다만, 이번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는 무역적자가 아닌 펜타닐(마약) 통제와 관련된 것이었음

- FTA 체결국 중 멕시코, 캐나다, 한국 3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전체의 25.5%로 높음 ⇒ 한미 FTA 재협상 가능
  - \* 미국의 FTA 체결국(20개국): 멕시코, 캐나다, 한국, 호주, 바레인,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요르단, 모로코, 니카라과, 오만,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
  - \* 호주는 무역수지 흑자(미국 입장)인 상황
- 또한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도 최근 들어 상승하고 있어,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더 높아짐
  - \*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초기인 2017년에 228.9억달러에서 2024년에는 658.5억달러로 증가함

미국 무역적자 규모

중국(2,954억달러), EU(2,356억달러), **멕시코(1,718억달러)**, 베트남(1,235억달러), 대만(739달러), 일본(685억달러), **한국(660억달러)**, 캐나다(633억달러), 인도(457억달러)

표 1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단위: 억달러)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무역 적자	-658.5	-514.0	-438.7	-291.8	-248.0	-206.1	-179.5	-228.9	-276.7

자료 : 무역협회, <https://stat.kita.net/stat/istat/uts/UsltemImpExpDetailPopup.screen>(검색일자: 2025. 2. 26.)

## 나. 상호관세

- 일반적으로 상호관세는 미국 수출품에 부과하는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상호주의)하겠다는 것으로 여겨짐
-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 제정을 공약했으나, 의회 동의가 필요하고, 공화당 내 자유무역 지지론자의 반대로 제정이 어려울 수 있음
  - 관세 협상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협상 불발 시 징벌적 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 제정
-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 제정보다는 다른 수입규제제도를 이용해서 상호관세 명목의 관세정책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여짐
  - 상호관세라고 명명하면서 보조금, 다양한 비관세 장벽, 그리고 심지어 부가가치세 등도 함께 언급하고 있는 혼란한 상황임
    - \* 상대국의 보조금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WTO 규정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조금과 자국 산업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매우 중요함(WTO 분쟁해결기구 판정)
    - \* 부가가치세는 내국세로서 수입물품과 함께 국내 생산품에도 동일하게 부과되므로 WTO 내국민 대우 원칙에 합치됨

- 현재 상호관세는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도, 브라질, 베트남 등이 우선 지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짐
  - 우리나라는 한미 FTA로 인해 양자 간 무역에 대해 무관세 혹은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품목 수 기준으로 약 98%의 품목에 대해 무관세 적용 중

## 다. 기타 미국의 수입규제제도

- 미국은 법적으로 다양한 수입규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수입규제제도는 WTO가 인정하여 대부분 국가가 공통으로 운영하는 무역구제제도와 개별 국가별로 운영하는 제도로 나눌 수 있음
- 미국은 「관세법」과 「무역법」에 의해 수입규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임
  - 한국은 트럼프 1기 때 협상을 통해 자발적으로 수출을 줄이는 쿼터 부과국(수량 제한)임
  - 그러나 트럼프 2기에서는 예외 없이 모든 국가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힘

표 2 미국의 수입규제제도 및 관련 법령

	수입규제수단	관련법	해당조항 (연방법전 기준)	담당 행정기관	가능조치	
WTO 협정 승인	반덤핑관세	1930년 「관세법」	제702조 (제1671조)	상무부(DOC), 국제 무역위원회 (USITC)	관세 부과	
	상계관세	1930년 「관세법」	제701조 (제1673조)		관세 부과	
	세이프가드	1974년 「통상법」	제201조 (제2251조)	국제 무역위원회 (USITC)	관세 부과, 수량제한	
기타	국가 안보 수호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를 위한 제재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제1862조)	상무부 (DOC)	관세 부과 수량제한
	제301조 제도	일반 301조	1974년 「무역법」	301조~309조 (제2411조~ 제2419조)	무역대표부 (USTR)	관세 부과, 수입제한, 무역협정양허유예, 특혜유예(GSP 등), 무역협정체결
		슈퍼 301조	1974년 「무역법」	제310조 (제2420조)		
		스페셜 301조	1988년 「종합무역법」	제182조 (제1302조, 제1303조)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1930년 「관세법」	제338조	무역대표부 (USTR)	수입중지, 수입금지
	국제수지 위기대응		1974년 「무역법」	제122조	대통령	최대 15% 관세 인상 (최장 150일 간)
	BHC 수정조항 환율조작국 대응		2015년 「무역원활화 및 집행법」	제701조 (제4421조)	재무부 (DOT)	정부조달금지, 해외민간투자 공사 금융지원 금지

주: 미국의 법령 병기에 따라 「1930년 관세법」 제730조는 연방법(U.S.C.) 제1671조에 해당함

「무역법」 제301조: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

「무역법」 제232조: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 보호

「무역법」 제122조: 심각한 국제수지 및 달러가치가 하락(환율조작)하는 경우, 최대 15% 관세 인상(최장 150일간)

「관세법」 제338조: 미국산 상품에 상품에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최대 50% 관세 부과, 또는 수입금지

자료: 정재호 외, 『주요국의 수입규제제도 비교 연구』, 관세연구 18-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 11.

## 2. 우리나라 무역구제제도 및 관련 관세 제도

### 가. 보복관세

- 「관세법」 제63조에서는 보복관세를 규정하고 있음
  -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해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보복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시 물품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sup>1)</sup>
  - 물품에 관한 자료는 무역이익에 침해되는 행위를 한 나라 및 그 행위의 내용, 우리나라에서 보복조치를 할 물품, 피해상당액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관세 부과 내용 등임
-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음<sup>2)</sup>
  -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sup>3)</sup>

### 나. 조정관세

- 국제무역체제를 규정하는 GATT에서는 예외적일 때에 한하여 최혜국 대우<sup>4)</sup> 및 내국민 대우 원칙<sup>5)</sup>이 적용되지 않는 차별적인 무역 제한 조치를 허용하고 있음
  - GATT 제20조에서는 공중도덕의 보호,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의 보호 등 일반적인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GATT 제21조에서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제평화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안보예외에 따른 무역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상에 GATT 제20조 및 제21조 예외규정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나 예외사항에 대한 수출입 제한 및 금지 조치만 가능하며 각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어려움
  - 「대외무역법」에서는 전쟁, 무역에 대한 차별 및 제한, 국제평화 및 안전,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 보호 등 필요한 경우 수출입 제한 및 금지를 허용함
  -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대응한 관세 부과는 불가능하고, 수출입 제한 및 금지만 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정책을 사용하기 어려움
- 이런 이유로 「관세법」 제69조에서 국제평화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조정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8년에 조정관세 기능을 다음과 같이 확대함
    - GATT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제평화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안보 예

1) 「관세법 시행령」 제86조

2) 「관세법」 제64조

3) 「관세법」 제63조

4) 한 국가가 동종의 제품에 대하여 관세, 통관, 수출입 절차 및 규칙 등 국제통상관계에 있어서 특정 국가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다른 국가에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

5) 수입상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내국세나 그 외 상품의 매매에 관련되는 각종 국내규제와 관련하여 국내상품에 대하여 허용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

- 외에 따른 무역제한을 반영함
- 조정관세는 최대 100%까지 관세 부과 가능
- 다만, 현재 조정관세는 조정관세의 다른 목적인 농림축산물 국내외 가격 차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있음

다. 기타 수입규제제도

- 우리나라도 WTO에서 규정한 무역규제제도와 함께 미국 수입규제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양한 수입규제제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3 우리나라의 수입규제제도 및 관련 법령

	수입규제수단	관련법 및 규정	해당조항	행정기관	가능조치
WTO 협정 승인	덤핑방지관세	「관세법」	제51조부터 제56조	기획재정부	관세 부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상계관세	「관세법」	제57조부터 제62조	기획재정부	관세 부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		
	긴급관세	「관세법」	제65조부터 제67조의 2	기획재정부	관세 부과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관세법」	제68조		
긴급수량제한 조치	「대외무역법」	제39조부터 제41조	산업통상 자원부	수량 제한 (한시적)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22조의 6
기타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제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14조의 3	무역위원회	수출입 제한 및 금지, 과징금 부과
	국제무역규범 위반 조사제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부터 제26조	중앙행정 기관의 장	위반시정에 필요한 조치 (구체적 내용 없음)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대외무역법」	제5조	산업통상 자원부	수출입 제한 및 금지

자료 : 정재호 외, 『주요국의 수입규제제도 비교 연구』, 관세연구 18-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p. 123~124.

### 3. 참고 사례

#### 가. 한중 마늘 분쟁

- 우리 정부는 2000년 6월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 조제 마늘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인상함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냉동마늘과 초산 조제 마늘의 관세율을 30%로 정했는데, 중국에서 한국 수출을 목적으로 마늘 재배를 확대하면서 1999년의 냉동마늘과 초산 조제 마늘 수입이 1996년에 비해 9배 이상 급증함
  - 중국산 마늘의 수입 급증으로 마늘 재배농가의 피해가 확산되자 국내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함(WTO에 정식 통보)
- 이에 중국은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해 잠정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여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함
  - 당시 중국은 WTO 미가입국으로 WTO 제소 불가능
- 2000년 7월 말에 매년 일정 물량의 마늘을 30~50% 관세로 수입하기로 타결
  - 2003년 5월로 되어 있던 세이프가드 기간은 2002년 말까지로 단축

#### 나. 미국의 세탁기 반덤핑 조치

- 미국은 2013년 2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함
  - 2011년 12월부터 삼성전자 및 LG전자 세탁기에 대해 조사가 시작됨

- 이에 우리 기업들은 2013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여 승소함
  - 2016년 WTO는 미국의 반덤핑협정 위반을 판정함
    - 미국의 반덤핑관세율 산정방식이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함
    - 미국의 제로잉방식에 대해 WTO 불합치 판정을 내림
- 그러나 미국이 WTO 판정을 불이행하자 한국 정부는 WTO에 보복 중재 절차를 개시하여 최종 연 8,481만달러 규모의 보복 권한을 승인 받음
  - 미국은 WTO 분쟁해결기구 판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말까지 반덤핑관세를 부과함
  - 우리 입장에서 반덤핑조치 관련 최초의 보복중재 및 이행보복 조치임
    - 당초 우리나라는 7.1억달러 규모의 보복 권한을 요청하였지만,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보복 규모가 결정됨
- 보복의 실효성 문제 등의 이유로 삼성과 LG전자는 세탁기 생산방식을 미국 현지생산으로 선회함
  - 미국은 2018년부터 반덤핑관세를 철회하고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함
    - 세이프가드 조치는 2023년 2월에 종료됨
  - 보복조치는 상대국에 승인된 규모만큼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인데, 실제 세탁기 산업과 연관된 산업에 대해 수입이 제한되지 않는 이상 피해를 본 세탁기 산업에 수입제한으로 인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런 이유로 다수의 국가가 보복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삼성과 LG전자는 생산기지를 한국에서 중국으로 다시 베트남 및 태국으로 옮겼고, 결국 미국 현지 생산을 선택함

# 03 결론 및 정책시사점

- 미국은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기존 USMCA, FTA 등 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 높음
  - 2월 초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는 펜타닐(마약) 통제와 관련된 것이어서 향후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USMCA 재협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멕시코 생산을 통해 현행 USMCA의 무관세 혜택을 악용하고 있다고 보아 원산지 규범에 대한 후속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 최근 멕시코는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자국산으로 대체하는 정책 협의 중
- 미국 트럼프의 관세 인상은 결국 무역적자 개선에 초점이 있기에 보복적인 관세 대응보다는 무역적자 개선 방법 마련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는 2017년에 228.9억달러에서 2024년에는 658.5억달러로 증가함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이 향후 지속될지, 일시적인 인상일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노린 수단인지는 현재까지 불분명한 상황임
    - 다만 관세 인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에 한계가 있음

## 트럼프 1기 FTA 재협상

- NAFTA ⇒ USMCA
  - 자동차, 자동차부품, 섬유류, 농산물, 디지털 제품, 철강, 알루미늄
  - USMCA 재협상이 2026년에 예정되어 있지만, 앞당겨질 듯
- 한미 FTA 개정
  - 트럭 관세 유예 연장(2041년 관세 폐지 일정)
  - 예상과 달리 순조롭게 마무리된 것은 미국이 원하는 것(king pin)을 제시했다고 평가

- 우리나라의 대(對)미국 수입액 상위 품목은 원유, 천연가스, 프로판 등 기초 원재료이며, 이들 품목의 수입 증대를 통해 무역적자를 개선할 여지가 있음
  - 원유, 천연가스 등의 기초 원재료는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들임
  - 미국 원유 등 수입의 증가는 대(對)미국 무역적자 개선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원유도입선 다변화 정책에도 부응함
    - \* 원유도입선 다변화 정책은 중동 이외의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원유를 수입하여, 중동분쟁 등으로 인한 원유가격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임
  - 최근 일본, EU 등에서도 미국 LNG 추가 구매 의사를 표명함
    - EU는 트럼프 1기 때 LNG, 대두 수입 확대로 관세 갈등을 해결한 바 있음
- 앞선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무역 제재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통상분쟁은 오랜 기간 수출감소로 인한 피해를 남긴 채 결국은 미국 현지 생산 확대로 종결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와 지역 경제 침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미국 현지 생산 추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가로 국내 산업 공동화 및 이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 마련도 필요함

표 4 대미국 수입액 상위 품목(2020~2023년 평균)

(단위: 억원)

	HS 6단위	품명	평균 수입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원유)	126,225
2	271111	천연가스(액화한 것)	55,050
3	271112	프로판(액화한 것)	43,182
4	848620	반도체 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40,392
5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26,753
6	848690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의 부분품과 부속품	17,106
7	210690	기타 조제식료품	14,186
8	271113	부탄(액화한 것)	11,248
9	870323	불꽃점화식 승용자동차(실린더 용량 1,500cc~3,000cc)	10,587
10	271012	경질유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 함유량 70% 이상)	9,335
11	020130	뼈 없는 쇠고기(신선, 냉장)	9,276

## 참고문헌

- 정재호·노영예·박지우, 『주요국의 수입규제제도 비교 연구』, 관세연구 18-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무역협회, <https://stat.kita.net/stat/istat/uts/UsItemImpExpDetailPopup.screen>(검색일자: 2025. 2. 26.)

# kipf